

'20년도 6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

1.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: 456 + α 명

※ α : 추가도입 인원(3.5천명)을 고용 개시 후 업종별 경쟁률(신청현황)에 따라 추가 배정

2. 사업자 고용허용인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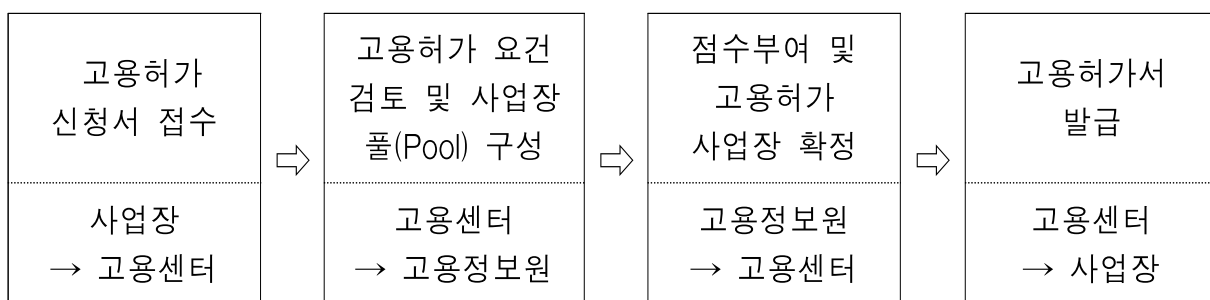
연평균 공사금액 (원도급자 총공사금액 기준)	외국인고용 상한 인원
15억원 이상	공사금액 X 0.4(신규0.3) (현장별 최대 30명)
15억원 미만	5명(신규 3명) 계수 미적용

※ 연평균공사금액 : 총공사금액 × {12/총공사기간(월)}

※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

※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(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)

3. 외국인력 배정 절차



4. 단계별 세부 절차

1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: 6.1(월) ~ 6.15(월)

-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.

-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, 인터넷(www.eps.go.kr)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허가 신청 시 ‘외국인 기숙사 시설표’를 제출하여야 하며, 향후 사업장 지도·점검시 시설표 내용과 다른 기숙사 제공시 감점이 부여되어 신규인력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,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
- 코로나-19로 인하여 송출국의 출입국통제,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1,2분기 발급자 입국 지연되어 3분기 발급자도 입국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근로계약체결 후 입국시기 연기 요청시, 고용허가서 발급 후 도입 포기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

유의사항

-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(워크넷)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**가점혜택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**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**
- ③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**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** 합니다.
 - 다만,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④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 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2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: 6.17(수) ~ 6.25(목)

-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.

※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

-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,
 -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,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.
-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.

<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>

- **기본 항목 (4개)**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(22.4~30점)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('19.2월~7월 까지 6개월간)가 많을수록(22.4~30점)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(제조업: 19~20점, 소수업종: 15~20점)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(내국인)를 많이 고용할수록(제조업: 14~20점, 소수업종: 18~20점) 높은 점수 부여
- **가점 항목 (7개)** ①농축산업·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(0.5~2.5점), ②우수 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(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.5점), ③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(2.5점), ④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(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), ⑤노동시간단축 사업장(2점), ⑥귀국 비용보험,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(1.5점), ⑦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 인증 사업장(각1.5점)
- **감점 항목 (9개)**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(10점) ②성폭행, 폭행, 폭언, 성희롱,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(성폭행 10점, 폭언·폭행 6점, 성희롱 5점, 임금체불·근로조건 위반 5점), ③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(성폭행 10점, 폭언·폭행6점, 성희롱 5점, 임금체불·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),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(건당 0.5~5점),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(1인당 1~5점),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(최대 10점, 1년간 감점),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(미제출)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(각 3점, 1년간 감점), ⑧최근 2년간 산재 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(각 3점), ⑨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(1~5점)
- **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:** ①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전산추첨

3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: 6.26(금) 14:00, 16:00

-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(휴대폰 문자 및 EPS 홈페이지(www.eps.go.kr))해 드리고,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.

4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: 6.29(월) ~ 7.1(수)

-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,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,
 -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·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5 대기순번 처리

- 고용허가서 취소·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사업장에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-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